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50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임종득 · 이수진
최수진 · 우재준 · 김형동
최보운 · 백종현 · 윤영석
안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, 보험료의 부과·징수, 시효 등에 관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. 그런데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기준이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함.

이에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의 보험료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64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1102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

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 전단 중 “제91조”를 “제91조, 제91조의2”로, “시효”를 “시효, 보험료 등 부과액의 제척기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4조(시효 등에 관한 준용)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91조, 제92조, 제96조, 제103조, 제104조, 제107조,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, 기간의 계산, 자료의 제공, 공단 등에 대한 감독, 권한의 위임 및 위탁, 업무의 위탁,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보험료”를 “장기요양보험료”로, “보험급여”를 “장기요양급여”로, “요양기관”을 “장기요양기관”으로, “건강보험사업”을 “장기요양사업”으로 본다.	제64조(시효 등에 관한 준용) --- -----제91조, 제91조의2----- -----시효, 보험료 등 부과액의 제척기간----- -----. -----. -----.